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40-10

(‘14. 8. 1)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주요 변경사항

제 목	2013년	2014년
제외대상	● <신설> ● <신설> ● <신설>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u>15% 이상인 어린이집</u> *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정보공개 여부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3년
세부 선정기준	●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여 기본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u>80.00점 이상인 어린이집</u>을 대상으로 선정함 ●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총점 <u>4개 구간으로 구분</u> • 97.5점~100점 : 35점 • 95점~97.49점 : 32점 • 92.5점~94.99점 : 30점 • 90점~92.49점 : 28점 ● 건물 소유 이용 형태 - (소유여부) • 자기 소유시설인 경우(자가) • 자기 소유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이용여부) •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 한 건물에 어린이집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여 기본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u>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u>을 대상으로 선정함 ●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90)+25 ● 건물 소유 이용 형태 - (소유여부) • 자기 소유시설인 경우(자가) • 자기 소유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이용여부) •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 한 건물에 어린이집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 아파트 관리동 內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

제 목	2013년	2014년
세부 선정기준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 5% 미만 감점 2점 • <u>5% 이상 10% 미만 감점 3점</u> • <u>10% 이상 15% 미만 감점 7점</u> • <u>15% 이상 감점 10점</u>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u>3개월</u> 평균 ● 보육교직원 전문성 □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가점 1점 ● 맞춤형 보육지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중 • 미실시 1점 • <u>1개 실시 3점</u> • <u>2개 이상 실시 5점</u> □ <신설>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 5% 미만 감점 2점 • <u>5% 이상 10% 미만 감점 5점</u> • <u>10% 이상 15% 미만 감점 8점</u> • <u>15% 이상 시설 제외대상으로 이동</u>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u>6개월</u> 평균 ● 보육교직원 전문성 □ <삭제> 제외대상으로 이동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 <u>보육교사 경력은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산정</u>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가점 2점 ● 맞춤형 보육지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중 • 미실시 0점 • <u>1개 실시 2점</u> • <u>2개 실시 4점</u> • <u>3개 실시 6점</u> • <u>4개 실시 8점</u> □ <u>맞벌이 자녀 재원을</u> - <u>총 정원 대비 맞벌이 자녀의 재원 비율</u> • <u>50% 이상 가점 3점</u> • <u>40% 이상 50% 미만 가점 2점</u> • <u>30% 이상 40% 미만 가점 1점</u>

제 목	2013년	2014년
세부 선정기준	● 어린이집 정보 공개 여부 -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내용 中 공개 항목 ● 기타 항목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5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가점 3점 -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가점 최대 10점 - 급여는 기본급의 평균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초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u>수당 미포함</u>, 4대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세금 공제 전 금액	● <삭제> 제외대상으로 이동 ● 기타 항목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2점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감점 3점 - <u>대표자 변경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u>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가점 최대 5점 - 월 지급액('13년 기준 1,434,050원 이상) : <u>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u> - <u>초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미포함</u>
운영기준	●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u>주기적으로</u>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 어린이집별 평가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보육교직원 현황, 특별활동 프로그램 현황, 급식, 예·결산 내역 등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 신규선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첫 달 20일까지 모든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 완료 * 예시) 5월 말 선정 확정된 어린이집은 6.20일까지 정보공개	●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 <u>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제 목	2013년	2014년
운영기준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건물 소유·이용 형태 변경 시 재평가 – 공공형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 중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선정확정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자가→임대, 전용→복합에 한함) 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재평가를 실시(변경사항 발생 익일부터 30일 이내, 전체 선정기준)하여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건물 소유·이용 형태 변경 시 재평가 – 공공형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 중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선정확정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자가→임대, 전용→복합에 한함) 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u>선정 당시의 기준으로</u> 재평가를 실시(변경 사항 발생 익일부터 30일 이내, 전체 선정 기준)하여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선정취소	● 선정 취소 사유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선정 취소 사유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 <u>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영유아 학대행위로 봄</u>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청구)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추후 사법기관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학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또는 재판 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I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개요

1. 공공형어린이집이란?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3. 2014년 사업 계획

- 운영 : 전체 1,600개소 운영 예정
- 신규선정 : 100개소 내외
 - * 상세선정 및 운영계획은 시·도별로 수립 후 시행

상세 선정요건 및 절차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내용 참고

4. 업무체계

가. 보건복지부((재)한국보육진흥원)

- 운영계획 수립
 - 선정요건 개발, 사업안내 및 업무매뉴얼 제작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총괄 등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점검 관리
 -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관리(자체포기 및 선정취소 등)

- 공공형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전문 인프라 관리

나. 시·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선정계획 수립 및 시행
 -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심사 및 선정(전산관리 포함)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점검 진행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및 선정취소 처리(전산관리 포함)
- 시·도 內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자율공부모임, 품질관리 컨설팅 등) 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관리

다. 시·군·구

- 시·도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 및 집행
 -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 확인 및 선정기관 추천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점검 진행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포기 및 선정취소 사유 통보(지정서 및 현판 폐기)
- 시·군·구 內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자율공부모임, 품질관리 컨설팅 등) 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관리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업무 연계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컨설팅 컨설턴트 지원
 - － 기타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업무 협조

II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 사업내용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1. 2014년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나.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 / 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14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14년 2월의 정·현원 현황이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다. 제외 대상 어린이집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은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를 의미

* 시점 계산방법 : 사업계획 공고일이 2014년 3월 1일인 경우, 그 전월인 2014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기산함(사업계획 공고일 이후부터 선정일까지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대상에 해당)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희시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유희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자료로 확인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45%×3.5㎡(33.07㎡)
 -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일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같음
 - 인근놀이터의 경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前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변경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함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 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용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여부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보수교육 대상 및 인정범위>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방과 후,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교사는 미포함
- 인정범위 : 기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신청서' 증빙 필요)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

라.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5.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 세부 선정기준(부록 : 세부 선정 기준표 참고)

기본점수 항목(100점)	가점 항목(최대 20점)	감점 항목(최대 11점)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③ 1급 보육교사 비율(30점) ④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5점) 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8점)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2점)	①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이상 교사 비율(3점) ② 원장의 영유아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근무경력 기간(1점) ③ 원장의 현 어린이집 근속기간 (2점) ④ 맞벌이 자녀 재원율(최대 3점) ⑤ 총 현원대비 유아현원 30% 이상 충족(3점) ⑥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3점) ⑦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최대 5점)	① 월 용자 상환액 및 임대료 합의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최대 8점) ②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3점)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		
- 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수 / 전체어린이집 수 $\times 100$)보다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4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① 평가인증 점수(기본)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를 인정

- * 다만, 2014년도(기준에 평가인증을 받고 재인증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별 선정 공고일이 속한 월에 인증결과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가능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90)+25
 <예시> 평가인증 총점이 94.82점인 경우, $(94.82-90)+25 = 29.82$ 점
- 반올림은 인정하지 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점수로 평가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기본, 감점)

- 건물 소유·이용 형태 판단 시점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소유여부)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이용여부)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
 - * 아파트 관리동 內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
- 용자금 상환액 등 산출 기준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원장이 부담하는 금액 전부를 합한 액수로 산정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용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times$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기본)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times$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 * 방과 후 보육교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보육교사 수 및 전체 보육교사 수 모두에서 제외
 -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해당급수 보육교사에 포함

<참고> 보수교육 대상 및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	×	×
G	2급	방과 후 보육교사	-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x 100

- 원장 재직 경력(기본)
 -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시점은 시·도별 선정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개월 수 및 일수를 반올림하지 않음
- 보육교사 근속 기간(가점)
 - 3년 이상 근속 교사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 원장의 관련학과 전공 및 근속 기간(가점)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보육교사 경력은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산정
 -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원장
 - * 판단시점 : 시도별 공공형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④ 맞춤형 보육지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기본)

- △시간연장, △휴일, △장애아(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 보육 中 1개 실시(2점), 2개 실시(4점), 3개 실시(6점), 4개 실시(8점)
-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운영
 - * 다문화 보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다만, 사실 확인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함

－ 맞벌이 자녀 재원율(가점)

- 총 정원 대비 맞벌이 자녀의 재원 비율이 50% 이상(3점), 40% 이상~50% 미만(2점), 30% 이상~40% 미만(1점)
 - * 다만, 농어촌 지역은 40% 이상(3점), 35% 이상~40% 미만(2점), 30% 이상~35% 미만(1점)
- 맞벌이 자녀 재원을 판단 시점은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맞벌이 증빙서류>

※ 발급시점 : '13.1.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 취업의 원칙적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인 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업인 경감 내역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⑤ 지자체 특성화 지표 예시(기본)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석면검사 의무 실시대상 : 430㎡이상)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

⑥ 기타 항목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가점)
 -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 반 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현원(영아+유아)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은 제외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감점)
 - * 대표자 변경 산정 시점은 시·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전 3년(공고일이 2014년도 3월인 경우 2011년도 3월부터 2014년도 2월까지임)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가점)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외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가점)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6개월간)의 기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 * 월 지급액('13년 기준 1,434,05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미포함

- *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기간 중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前·後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 2013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434,05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 * 점수 산정표 ※ 계산식) $(5 \times a + 3 \times b + 1 \times c + 0 \times d) / N$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43만원이상	5점	a
131~142만원	3점	b
121~130만원	1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계		N

<예시>

- 6개 반을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평균
‘가’ 반	141만원	141만원	141만원	141만원	144만원	144만원	142만원
‘나’ 반	134만원	134만원	134만원	134만원	137만원	137만원	135만원
‘다’ 반	129만원	129만원	129만원	129만원	132만원	132만원	130만원
‘라’ 반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50만원	150만원	148만원
‘마’ 반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5만원	128만원	128만원	126만원
‘바’ 반	118만원	118만원	118만원	118만원	121만원	121만원	119만원

- 143만원 이상 : 1명 / 131~142만원 : 2명 / 121~130만원 : 2명 / 120만원 이하 : 1명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43만원 이상	5점	1명
131-142만원	3점	2명
121-130만원	1점	2명
120만원 이하	0점	1명
계		6명

• 가점 계산 : $(5점 \times 1명) + (3점 \times 2명) + (1점 \times 2명) / 6명 = 2.17점$

2. 선정절차

가. 선정방법

-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원

* 서울시 제외

[행정사항]

-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은 4월 內 공고하여 상반기 중 선정
 - * 시·도의 업무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6월까지 진행
- 시·도별 선정 및 운영 계획은 2014년 4월 중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보고

- 사전에 시·군·구별 물량을 정하지 않고, 시·도 전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다만, 시·도별로 지방비 편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선정 물량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도 가능
- 시·군·구간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별 균형 있는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 시·도별로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자체 선정

나. 선정절차

- 선정공고(시·도)
 -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신청접수(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지자체별로 선정요건 부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선정요건 1차 확인(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1차 선정 후 시·도로 추천
- 선정요건 부합 특히,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놀이터 설치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여부는 반드시 현장 확인

- 선정기관 추천(시·군·구)

- 시·군·구별로 정해진 물량의 1.5배~2배수 내의 어린이집을 추천, 사전에 정해진 물량 없이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중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 시·도로 추천 시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별 우선순위 목록 및 신청 어린이집별 심사표 업로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시·도)

- 시·도별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 선정 시에는 시·도별로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최종 선정 시 당초 물량의 110%를 선정, 추가 10%는 예비 선정 대상자로 관리, 다만 예비 선정 대상자는 선정자 발표 시에는 발표하지 않음
- 이후 기존에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 취소된 경우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예비 선정대상자를 별도의 선정 심사 없이 선정
- 선정 후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의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함께 공고
- 시·도는 최종 확정된 명단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 서면 보고

선정심사단 구성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정심사단 대체 가능
- 선정심사단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보육교사, 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 보육교사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과 관계없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추천
-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활용 시에도 이미 위원으로 위촉된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는 제외

● 선정 확정(시·도)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확정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함

[행정사항]

- 4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4월 중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확정된 경우는 4월 30일에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확정하여 5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확정 시 선정 및 운영기준 관련 준수사항, 운영비 지급일 등을 명시한 서약서(부록 : 관련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및 시·도 상호 보관

● 지정서 및 현판 배부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하여 시·도로 배부

III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에 해당

가. 유효기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 다만, 시범사업기간('11. 7월부터 '12. 6월까지)에 선정된 어린이집 : '12. 9월부터 '15. 8월까지 3년 간 유효

나.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제 일시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
-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 수납 불가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월 급여를 낮출 수 없음(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표 참고)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1,477,070원) 기준을 준용
 - * 월 지급액('14년 기준 1,477,07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
 -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정은 월 지급액 기준(보육사업안내 참고)
 -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의 근무수당은 별도
-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평일 19:30분까지 운영
 - 지역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 운영 불가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특별활동 적정관리 방안 준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 다만, 기존에 민간보험회사 등에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의 종료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정 가능
 -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필수교육, 자율공부모임, 품질관리 컨설팅 등) 의무 참여
 - 사후품질관리 참여실적은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시 반영
-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1기관 1카드 사용 시행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2011년~2013년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도 공공형어린이집 제외 사유 및 참여 기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표에 제시된 기간 동안 유예 인정

선정기준	내용	유예기간		
		2011년 선정 시설	2012년 선정 시설	2013년 선정 시설
제외사유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유효기간 內	-	-
제외사유	놀이터 설치기준 미준수	유효기간 內	-	-
제외사유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유효기간 內	-	-
제외사유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의 15% 이상	유효기간 內	유효기간 內	유효기간 內
참여 기본요건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 평균 80.00% 이상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유지	유효기간 內	-	-

- 공공형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 중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선정확정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자가→임대, 전용→복합에 한함)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선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변경사항 발생 익일부터 30일 이내, 전체 선정기준)하여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시·도(시·군·구)에서 정기적(예: 반기별, 분기별)으로 점검

- 관리동에서 운영하던 공공형 어린이집이 해당 아파트와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타 건물로 이전할 경우 아래 요건 충족 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① 대표자 변경없이*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내의 이전

* 기존 관리동어린이집 대표와 이전한 어린이집의 대표가 동일

② 선정 당시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것

* 공공형 재평가 시 인증점수는 기존 관리동어린이집에서 취득한 점수를 준용

* 원장 및 보육교사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현 어린이집' 경력 산정시 관리동어린이집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

- 단,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관리동어린이집에 대한 계약이 해지(종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아울러 이전 이후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인증결과 90점 미만시 선정이 취소됨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가. 운영비 지급

-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매월 정해진 일자에 운영비 차등 지원

정원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월 지원액	116만원	253만원	268만원	445만원	460만원	565만원	580만원	829만원	844만원	875만원

-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
- 시·군·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 보육수요와 함께 운영비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절차

- ☐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행위는 불요
 -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신청행위를 보조금 교부 신청으로 봄
- ☐ 시·군·구에서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자동생성된 운영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승인처리
- ☐ 소관 시·군·구는 매월 특정일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계좌로 운영비 지급
-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입예산과목 중 기타지원금으로 처리
-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정원 변경 시 변경된 정원 규모에 따라 정해진 운영비 지원 가능
 - * 다만,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나.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IV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운영 포기

1. 취소권자 : 시·도지사

2. 선정 취소 사유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받은 결과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 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영유아 학대행위로 봄)

- ①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청구)한 경우
- ②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 * 추후 사법기관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학대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사법기관에서 수사 결과 또는 재판 결과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

3. 선정 취소 절차

- 시·군·구는 선정 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시·군·구는 행정처분(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시·도는 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는 취소 사유를 7일 이내에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진행

- 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등 실시

* 어린이집의 의견서 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둠

- ②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실시

* 어린이집 제출 의견서 검토 후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처분 결정

-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선정취소 통보를 하고 시·도(시·군·구)는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조치 함

- 시·도는 선정 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는 선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 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보고

- 선정 취소일 : 처분 확정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군·구	선정 취소발생 확인·보고	• 선정 취소 사유 확인 후 시·도에 서면보고
시·도	취소사유 확인 및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행정처분 결정 • 시·군·구를 통하여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통보 -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조치 • 선정 취소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서면보고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시·군·구	지정서 및 현판 회수·폐기	• 시·도의 선정 취소 후 결정사항을 어린이집에 통보 • 지정서, 현판 회수 폐기 서면보고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4. 선정 취소 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선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운영비 환수

5. 선정 취소 사후처리

- 선정 취소 처분 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
 - * 선정 취소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산 처리
- 선정이 취소된 공공형어린이집은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통상적인 행정구제절차 이행 가능

6. 운영 포기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포기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군·구는 3일 이내에 시·도에 포기신청서를 제출, 시·도는 포기신청서를 시·군·구로부터 받은 날 부터 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전산처리)
- 포기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다만, 해당 월에 대한 보조금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 후에 포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포기신청일이 속한 월의 보조금까지는 지급, 그 다음 달부터 보조금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포기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불가

부록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배점 항목	2013년			2014년			비고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평가인증 점수	35점			35점			- 배점 방식 변경 및 점수 조정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 - 90) + 25
○ 평가인증 점수 97.5점~100점	35점						
○ 평가인증 점수 95점~97.49점	32점						
○ 평가인증 점수 92.5점~94.99점	30점						
○ 평가인증 점수 90점~92.49점	28점			25점			
□ 건물 소유·이용형태	20점			20점			- 배점 조정 -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이용형태 전용으로 구분 - 적용기간 조정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조정)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시설 제외대상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20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10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10점			5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0점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2점			2점	
○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3점			5점	
○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7점			8점	
○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10점				
□ 보육교직원 전문성	35점			35점			현행 유지
○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30점			
-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30점			30점			
-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24점			24점			
-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13점			13점			
-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5점			5점			
-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0점			0점			

배점 항목	2013년			2014년			비고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5점			• 현행 유지
- 15년 이상	5점			5점			
- 7년 이상 15년 미만	3점			3점			
- 7년 미만	1점			1점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6점		
- 최근 3년간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당 1점 감점			최대 5점				• 제외 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30% 이상		3점			3점		• 현행 유지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1점			1점		• 현행 유지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원장		1점			2점		• 배점 조정
□ 맞춤형 보육지원	5점			8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종일반 1개반 이상 운영), △다문화보육 중							• 배점 조정 • 실시 개수에 따른 점수 부여
- 4개 실시				8점			
- 3개 실시				6점			
- 2개 실시				4점			
- 2개 이상 실시	5점						
- 1개 실시	3점			2점			
- 미실시	1점			0점			
○ 맞벌이 자녀 재원을					3점		• 가점 신설(3점)
-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3점		
- 40% 이상 50% 미만(*농어촌 35% 이상 40% 미만)					2점		
- 30% 이상 40% 미만(*농어촌 30% 이상 35% 미만)					1점		

배점 항목	2013년			2014년			비고
	기본	가점	감점	기본	가점	감점	
☐ 어린이집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평가 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포털에 연동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인정)		4점					• 제외 대상
- 모두 공개		4점					
- 3~4개 공개		1점					
- 3개 미만 공개		0점					
☐ 지자체별 특성화지표	5점			2점			• 배점 조정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3점			3점		• 현행 유지
☐ 최근 3년간 대표자(및 원장) 미변경		3점			(삭제)		• 대표자 변경 시 감점으로 변경 • 원장 변경 삭제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3점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3점		• 현행 유지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최대 10점			최대 5점		• 배점 조정
계	100점	28점	15점	100점	20점	11점	

부록 2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 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 정원(명) ☐ 현원(명)									
어린이집 기본설비	보육실 면적		기타면적							
	☐ 보육실 : m ²		☐ 화장실 : m ² / ☐ 목욕실 : m ² / ☐ 조리실 : m ²							
농어촌특례지역	☐ 有 ☐ 無									
취약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통합보육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건물소유형태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 아파트 관리동 內 어린이집 이용형태 전용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	월 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금액				월 보육료 수입					
	월 임대료· 융자금 상환액 비율		☐ 보육료 수입의 5%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 보육교사 자격등급 산정시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은 중복 선택 가능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보육교사 총 인원	명	☐ 1급 보육교사		명	☐ 2급 보육교사		명	☐ 3급 보육교사		명
		☐ 유치원 정교사		명	☐ 특수교사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1급, 2급, 3급)		현 자격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교사										
연장가능										

[별지 제1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일시		
		☐ 無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有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유희실 설치 등)) ☐ 無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有 (취소 일자 및 사유 :)							☐ 無
	공공형어린이집 포기 여부	☐ 有 (포기 일자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 有(명) ☐ 無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 ☐ 보육료 수입의 15% 미만							
	정보공개 여부	☐ 공개 ☐ 미공개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 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만 기재)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보육아동 현황	사업공고일이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
		정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100%)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이 취소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2항목)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이내임	()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예 () 아니오()

②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예 () 아니오()

③ 아래 어린이집 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

예 () 아니오()

2층 이상	비상계단 (4항목)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 높이는 1.5m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 () () ()
	피난용 미끄럼대 (4항목)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관의 평균 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관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 () () () () ()

[별지 제2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구분	총점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 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지자체 특성화 지표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20점/ -11점)	35점	20점 (-8점)	35점 (+6점)	8점 (+3점)	2점	- (+3점)	- (-3점)	- (+3점)	- (+5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평가인증 점수	25점~35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90)+25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20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0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5점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0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2점	⑤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5점	⑥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8점	⑦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별지 제2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24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3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5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0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6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가점 3점	①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②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2점	③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8점		
맞춤형 보육지원	8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장애아 통합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보육 중	
	8점	① 4개 실시	
	6점	② 3개 실시	
	4점	③ 2개 실시	
	2점	④ 1개 실시	
	0점	⑤ 미실시	
	가점 3점	맞벌이 자녀 채용율	
	가점 3점	①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가점 2점	② 40% 이상 50% 미만(*농어촌 35% 이상 40% 미만)	
	가점 1점	③ 30% 이상 40% 미만(*농어촌 30% 이상 35% 미만)	

[별지 제2호 서식]

[4 면]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자 자기평가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2점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2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감점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감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5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최대 가점 5점	구분	점수
		143만원이상	5점
		131-142만원	3점
		121-130만원	1점
		120만원 이하	0점
		계	
		교사 수	

※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점수 산정 방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5점	a
131-142만원	3점	b
121-130만원	1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계		N

* 계산식 : $(5 \times a + 3 \times b + 1 \times c + 0 \times d) /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요건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인가 일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소)					팩스번호			
	농어촌특례 지역	☐ 有 ☐ 無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 협동 ☐ 직장							
	정부지원 여부	☐ 인건비 ☐ 차량운행비 ☐ 교재교구비 ☐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행정처분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아동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			
		☐ 無							
	원장 행정처분 여부	☐ 有 (행정처분 일자 :)		행정처분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			
		☐ 無							
	비상재해대비시설	☐ 有 ☐ 無							
	놀이터	☐ 有 (유형 : ☐ 옥내 ☐ 옥외 ☐ 인근 ☐ 기타(유희실 설치 등)) ☐ 無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여부	☐ 有 (취소 일자)		취소사유					
		☐ 無							
	공공형어린이집 포기 여부	☐ 有(포기 일자 :) ☐ 無							
	원장의 타 시설 겸직 여부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 교육 미이수자	☐ 有 ☐ 無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보육료 수입의 ☐ 15% 미만 ☐ 15% 이상							
	정보공개 여부	☐ 공개 ☐ 미공개							
민원 발생 여부	☐ 有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 無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 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만 기재)				평가인증 시 부여 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보육아동 현황	사업공고일 이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
		정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100%)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별지 제3호 서식]

[2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구분	총점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 이용 형태	보육 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지자체 특성화 지표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배점	100점 (+20점/ -11점)	35점	20점 (-8점)	35점 (+6점)	8점 (+3점)	2점	- (+3점)	- (-3점)	- (+3점)	- (+5점)
득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평가인증 점수	25점~35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환산점수 : (평가인증 총점-90)+25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20점		
건물 소유형태	20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0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5점	③ 임대 전용 어린이집	
	0점	④ 임대 복합 어린이집	
	-2점	⑤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5점	⑥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8점	⑦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별지 제3호 서식]

[3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35점		
보육교직원 전문성	3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24점	②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미만)	
	13점	③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5점	④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0점	⑤ 45% 미만(*농어촌 25% 미만)	
	5점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① 15년 이상	
	3점	② 7년 이상 15년 미만	
	1점	③ 7년 미만	
	가점 6점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가점 3점	①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30% 이상	
	가점 1점	② 원장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가점 2점	③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원장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8점		
맞춤형 보육지원	8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장애아통합 지정 또는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보육), △다문화보육 중	
	8점	① 4개 실시	
	6점	② 3개 실시	
	4점	③ 2개 실시	
	2점	④ 1개 실시	
	0점	⑤ 미실시	
	가점 3점	맞벌이 자녀 재원을	
	가점 3점	①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가점 2점	② 40% 이상 50% 미만(*농어촌 35% 이상 40% 미만)	
	가점 1점	③ 30% 이상 40% 미만(*농어촌 30% 이상 35% 미만)	

[별지 제3호 서식]

[4 면]

공공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2점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2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감점 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감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3점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가점 3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계	가점 5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최대 가점 5점	구분	점수
		143만원이상	5점
		131-142만원	3점
		121-130만원	1점
		120만원 이하	0점
		계	

※ 담임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점수 산정 방법

구분	점수	교사 수
143만원이상	5점	a
131-142만원	3점	b
121-130만원	1점	c
120만원 이하	0점	d
계		N

* 계산식 : $(5 \times a + 3 \times b + 1 \times c + 0 \times d) /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4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서약서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일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급일 :

본원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며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서약인 : 원장 ○○○ (인)

○ ○ 도 지 사(시장)

[별지 제5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2014. 0. 0.

수 신 : ○○○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2. 당사자	대표자 성명	○○○	어린이집 명	○○○ 어린이집	
	주 소	○○시 ○○구 ○○○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선정 이후 취소사유 발생 - 취소사유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귀 원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취소확정일 익월 1일부터 종료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	(☎)		
		전자우편			
		fax			
	제출기한		2014년 월 일까지		

○○시(도) 지사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처분		
2. 당사자	대표자성명		어린이집 명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00시(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행 정 처 분 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 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처분사유 :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에 심판청구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선택적으로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4. ○○. ○○.

○ ○ 도 지 사(시장)

[별지 제8호 서식]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하원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자		평가인증 시 부여받은 어린이집 아이디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원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 취하 사유						
위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록 3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취소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매뉴얼

※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추천

① 공공형 신청 어린이집 검색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검색>하면 신청탭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조회

● 공공형관리 ①

어린이집지역 운영지원기준 전체 신청구분 공공형

어린이집명 전체 검색 ③

② 신청 선정추천 반려 최종선정 최종선정취소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유아비율	총점	우선순위	운영비지원기준	선정추천취소사유
☐	2011.08.16	공공형	린이집	57.60	65.75	78.30	1	50 ~ 76인	
☐	2011.08.09	공공형	집	88.51	50.77	73.00	2	21 ~ 49인	
☐	2011.08.16	공공형	어린이집	98.98	76.45	67.00	3	21 ~ 49인	

② 신청 어린이집 1차 확인

○ (내용) 신청 어린이집 첨부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어린이집의 신청서와 자기평가서를 내려 받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①어린이집상세 ②보육교직원현황 ③아동현황을 클릭하면 신청된 어린이집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신청>탭 조회시 보이는 <우선순위>는 연번이며, 채점표 작성 후 저장하면 총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경됨

● 공공형/

시설지역 운영지원기준 전체 신청구분 공공형

시설명 전체 검색

① ② ③

신청 선정추천 반려 최종선정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정원/현원	우선순위	운영비지원기준	선정추천취소사유	첨부파일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49/41	1	20 ~ 49인		공공형신청.hwp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38/38	2	20 ~ 49인		공공형신청.hwp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117/94	3	98인 이상		공공형신청.hwp ④

CIS_첨부파일발기 - Windows Internet Explorer

● 첨부파일발기

공공형 신청.hwp

닫기

- (채점표 작성방법) 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채점표>클릭, 각 영역별 점수 입력 후 저장하면 총점이 합산되어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계산됨

● 공공형권

· 어린이집지역: 대구광역시 · 운영지배원기준: 전체 · 신청구분: 공공형

· 어린이집명: 전체 검색

☒ **시 권**
☐ 선정추천
 ☐ 반 려
 ☐ 최종선정
 ☐ 최종선정취소

☒	신청일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정원총족률	유아비율	총점	우선순위	운영비지원기준	선정추천취소
☐	2011.08.16	공공형	재어린이집	57.60	65.75	78.30	1	50 ~ 76인	
☐	2011.08.09	공공형	린이집	88.51	50.77	73.00	2	21 ~ 49인	
☐	2011.08.16	공공형	짜다어린이집	98.98	76.45	67.00	3	21 ~ 49인	

공공형/자율형 채점표 - Windows Internet Explorer

● 채점표

배점 항목	기본	가점	감점	점수
1. 평가인증 점수	35점			점 점 점수범위 : 25~35점
○ 점 점 -90+25 * 평가인증 총점 입력				
2. 건물 소유.이용형태	20점			점 점 점수범위 : 0~20점
○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점			
○ 임대 전용 어린이집	5점			
○ 임대 복합 어린이집	0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2점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10% 미만			5점	
○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15% 미만			8점	
3 보육교직원 전문성	35점			점 점 점수범위 : 0~30점
가. 1급 보육교사 비율	30점			
○ 70% 이상 * 농어촌 50% 이상	30점			
○ 60% 이상 70% 미만 * 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24점			
○ 50% 이상 60% 미만 * 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13점			
○ 45% 이상 50% 미만 * 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5점			
○ 45% 미만 * 농어촌 25% 미만	0점			
나.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력	5점			점 점 점수범위 : 1~5점
○ 15년 이상	5점			
○ 7년 이상 15년 미만	3점			
○ 7년 미만	1점			
7.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3점		
8.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최대		점 점
계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각 영역별 점수를 입력하면 <계, 총점>은 자동 생성되며, 최종 저장하면 총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경됨

③ 선정추천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선정추천> 클릭 → 확인

▶ **공공**

> 시설지역 > > 운영지비원기준 전체 > 신청구분 전체 >
 > 시설명 전체 > 검색

신청 선정추천 반려 최종선정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정원/현원	정원충족률	유아인원	선정추천	를	총점	우선순위	유명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38/38			선정추천		104	1	2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117/94					97	2	9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49/41					93	3	2

웹 페이지의 메시지


 선정추천하시겠습니까?

- *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반려>클릭시 <반려>탭으로 이동(사유입력)
- * <반려>시 해당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신청 가능
- *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선정추천취소>시 <신청>탭으로 이동(사유입력)
- * 시도에서 최종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할 경우 시군구는 <최종선정>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공공형관리

어린이집지역			운영지비원가준	전체	신청구분	공공형				
어린이집명	전체		검색							
신청	신청추천	반려	최종신청	최종신청취소	신청추천취소	어린이집 상세	보육교직원현황	아동현황	재정표	역세권일 저장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정원총족율	유아비율	총집	무선순위	운영비지원기준	신청취소사	
☐	2011.08.09	공공형	큰아집	56.71	51.13	94.60	1	77 ~ 97인		
☐	2011.08.08	공공형	지어린이집	99.75	49.75	86.00	2	50 ~ 76인		
☐	2011.08.10	공공형	거린이집	56.13	75.49	83.00	3	98인 이상		
☐	2011.08.08	공공형	거린이집	99.17	15.14	80.00	4	20인 이하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① 시군구에서 선정추천된 공공어린이집 검색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선정추천>탭에서 어린이집 조회

● 공공형관리

어린이집지역 전체 > 운영지원기준 전체 > 신청구분 전체

어린이집명 전체 검색

선정추천 선정 대기 최종선정취소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시군구	어린이집	정원총족율	유아비율	총점	우선순위	운영비지원
☐	2011.08.09	공공형		린이집	99.77	76.37	95.00	1	98인 이상
☐	2011.08.09	공공형		이집	56.71	51.13	94.60	2	77 ~ 97%
☐	2011.08.07	공공형		사랑어린이집	97.51	64.06	90.00	3	98인 이상
☐	2011.08.05	공공형		이집	98.37	50.92	88.00	4	77 ~ 97%

②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선정추천>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선정> 클릭 → 해당 어린이집은 <선정>탭으로 이동

○ 선정추천된 어린이집은 상단의 <채점표(시군구에서 작성)>와 첨부파일(어린이집에서 작성)을 참조하여 시도별 선정계획에 따라 최종 선정

● 공공형관리

어린이집지역 전체 > 운영지원기준 전체 > 신청구분 전체

어린이집명 전체 검색

선정추천 선정 대기 최종선정취소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시군구	어린이집	정원총족율	유아비율	총점	우선순위	운영비지원
☒	2011.08.09	공공형		린이집	99.77	76.37	95.00	1	98인 이상
☐	2011.08.09	공공형		이집	56.71	51.13	94.60	2	77 ~ 97%
☐	2011.08.07	공공형		이집		64.06	90.00	3	98인 이상
☐	2011.08.05	공공형		이집		50.92	88.00	4	77 ~ 97%
☐	2011.08.05	공공형		이집		66.67	87.30	5	77 ~ 97%
☐	2011.08.05	공공형		이집		67.97	87.00	6	77 ~ 97%
☐	2011.08.09	공공형		이집		64.50	86.00	7	98인 이상

웹 페이지의 메시지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예비 선정 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대기>버튼 클릭

● 공공형관리

> 어린이집지역 > 전체 > > 운영지배원기준 전체 > 신청구분 전체 >
 > 어린이집명 전체 > 검색

선정추천 **선정** 대기 최종선정취소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시군구	어린이집	정원총족율	유아비율	총점	우선순위	운영비자
☐	2011.06.14	공공형		어린이집	90.52	64.07	99.10	1	50 ~
☐	2011.06.21	공공형		어린이집	99.43	86.40	99.00	2	98인
☐	2011.08.19	공공형		어린이집	94.28	69.05	98.30	3	98인

*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시군구 <최종선정>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③ 공공형어린이집 예비 선정대상자 관리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선정추천>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대기> 버튼 클릭

○ 기존에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취소된 경우 또는 포기한 경우에 별도의 선정 심사없이 <대기> 탭에서 바로 <선정>가능

● 공공형/자율형관리

> 시설지역 > 선택 > > 운영지배원기준 전체 > 신청구분 전체 >
 > 시설명 전체 > 검색

선정추천 **선정** 대기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시군구	어린이집	정원/현원	정원총족율	유아인원	유아비율	총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알림 페이지의 메시지

대기하시겠습니까?

● 공공형/자율형관리

> 시설지역 > 선택 > > 운영지배원기준 전체 > 신청구분 전체 >
 > 시설명 전체 > 검색

선정추천 **선정** 대기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시군구	어린이집	정원/현원	정원총족율	유아인원	유아비율	총
☐	2011.06.02	공공형		어린이집	38/38	100.00	0	0.00	

* <대기> 중인 예비 선정 대상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선정> 버튼 클릭

3.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 관련 행정지원시스템 입력은 매 월 말일 및 말일 전날만 가능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공공형관리]

⇨ <최종선정>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선정취소> 클릭 → 취소사유 선택 후 저장

- 최종선정 이후 아래의 사유로 취소시 취소날짜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① 공공형관리

어린이집지역			운영지비원기준	전체	신청구분	공공형
어린이집명	전체		검색			
신청	선정추천	반려	최종선정	최종선정취소	신청취소	어린이집 상세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유아비율	총점
☐	2011.06.27	공공형	어린이집	96.67	0.00	94.00
☐	2011.08.10	공공형	어린이집	100.00	0.00	86.30
☐	2011.06.30	공공형	이집	99.12	0.00	83.00
☐	2011.06.30	공공형	집	78.54	61.36	81.00
						우선순위
						1
						2
						3
						4
						운영비지원기준
						20인 이하
						20인 이하
						20인 이하
						50 ~ 76인
						상태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최종선정취소사유 입력

어린이집

취소유형

☒ 평가인증 취소시

☐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비용 및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어린이집 내 급식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어린이집에서 자체 포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사유 및 기본요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저장

닫기

부록 4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관련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매뉴얼

※시스템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운영관리 접속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설치운영관리 > 어린이집인증 구분란에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 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 **설치운영관리**

설치인가정보 설치운영정보 비상재해대체시설

정부지원(인건비) * ☐ 미지원 ☐ 지원

기본보육료지원여부 * ☐ 지급 ☐ 미지급

추방자/재거 * ☐ 신규 ☐ 휴지 (1. 기간: [] ~ [] 2. 사유: []) ☐ 재거 (1. 일자: [] 2. 사유: []) ☐ 폐지 (1. 일자: [] 2. 사유: []) ☐ 하하 ☐ 반려 ☐ 미접 ☐ 불가 ☐ 민원처리중

운영정지 * ☐ 운영정지 (1. 기간: [] ~ []) ☐ 아동모집정지 (1. 기간: [] ~ []) ☐ 정원감축 (1. 기간: [] ~ [] 2. 감축정원: [] 명) => 결실의 유·무에 따라 감축

어린이집추가특성 ☐ 방과후교실 ☐ 외국인근로자자녀전담 ☐ 외국인근로자자녀돌봄 ☐ 외국어반 운영 ☐ 교육복지특화지역 ☐ 친환경농산물사용 ☐ 정거지도점검우수 ☐ 급식재료 공동구매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공식지정한 어린이집만 체크

농어촌지역여부 ☐ 농어촌대남 ☐ 농어촌 (☐ 농어촌 특권대남 ☐ 농어촌 특권)

어린이집인증여부 ☐ 인증어린이집대남 ☐ 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인증구분 ☒ 평가인증 ☐ 공공형 ☐ 서울형 ☐ 부산형 **공공형신청** 상태 :)

보험가입 * 1. 상해 : ☐ 가입 ☐ 미가입 2. 화재 : ☐ 가입 ☐ 미가입 3. 배상 : ☐ 가입 ☐ 미가입

보험가입기간 및 보험스펙 등록 ☒ 1. 상해보험기간 [] ~ [] 보험증서 스캔 등록 ☒ 2. 화재보험기간 [] ~ [] 보험증서 스캔 등록 ☒ 3. 배상보험기간 [] ~ [] 보험증서 스캔 등록

보험 (상태 :) (상태 :)

돌봄차량운영 * 미운영 차량신고 대수 : 선택 신청상태 : 선택

돌봄차량스펙 등록

2. 공공형 신청서 작성

- ① 시설인증란의 <공공형신청>버튼 클릭 후 팝업창이 보이면 ⇨ ② 자동생성 클릭 ⇨
 ③ <양식다운로드> 저장 후 상세내용 수기로 입력 ⇨ ④ 첨부파일 첨부 ⇨ ⑤ <저장>버튼 클릭
 ⇨ ⑥ <신청>버튼 클릭, 확인 ⇨ ⑦ <공공형신청> 상태가 : <신청>으로 변경

① [설치운영관리] → 어린이집 인증 구분의 <공공형신청> 버튼 클릭

⇒ 공공형 신청시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수정할 수 없음

어린이집인증여부	☐ 인증어린이집아님 ☒ 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인증구분	☒ 평가인증 ☐ 공공형 ☐ 서울형 ☐ 부산형	공공형신청 (상태 :)	
보험가입	1. 상해 : ☒ 가입 ☐ 미가입 2. 화재 : ☒ 가입 ☐ 미가입 3. 배상 : ☒ 가입 ☐ 미가입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양식 다운로드](#)
[신청](#)
[신청취소](#)
[취하](#)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상태	사유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동생성](#)
[저장](#)

신청구분	☒ 공공형	운영비지원기준																																										
신청일자																																												
정원/현원(6개월평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7월</th> <th colspan="2">8월</th> <th colspan="2">9월</th> <th colspan="2">10월</th> <th colspan="2">11월</th> <th colspan="2">12월</th> <th rowspan="3">정원총족률</th> </tr> <tr>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rowspan="2">NaN %</td> </tr> </table>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총족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NaN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총족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NaN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1개월이전</th> <th colspan="2">2개월이전</th> <th colspan="2">3개월이전</th> <th rowspan="3">유아비율</th> </tr> <tr> <th>현원</th> <th>유아</th> <th>현원</th> <th>유아</th> <th>현원</th> <th>유아</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rowspan="2">NaN %</td> </tr> </table>						1개월이전		2개월이전		3개월이전		유아비율	현원	유아	현원	유아	현원	유아							NaN %																		
	1개월이전		2개월이전		3개월이전		유아비율																																					
	현원	유아	현원	유아	현원	유아																																						
						NaN %																																						
평가인증 연도/기수	/		평가인증 참여유형	일반참여																																								
평가인증시 부여받은 아이디			평가인증 점수(총점)	0																																								
첨부파일	찾아보기...																																											

0건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② [자동생성] 버튼 클릭후 점수 확인

⇒ <자동생성>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신청 자격에 준하는 정보가 자동생성되며, 어린이집에서 수정할 수 없음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양식 다운로드 신청 신청취소 취하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상태	사유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동생성 저장

신청구분	공공형		운영비지원기준	21 ~ 49인									
신청일자	2012-08-03												
정원/현원(6개월평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6	28	46	27	46	26	46	27	46	27	46	27	58.7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	1개월이전		2개월이전		3개월이전		유아비율						
	현원	유아	현원	유아	현원	유아							
	0	0	0	0	34	19	55.88 %						
평가인증 연도/기수	2010 / 06		평가인증 참여유형		일반참여								
평가인증시 부여받은 아이디			평가인증 점수(총점)		90.3								
첨부파일	찾아보기...												

* 정원/현원(6개월평균)은 전년도 하반기 6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은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 3개월간 보육통합 통계자료로 자동계산

* 평가인증 자료는 해당 어린이집의 최종 평가인증 결과를 보여줌

③ <양식다운로드>의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① 양식 다운로드 신청 신청취소 취하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상태	사유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동생성 ③ 저장

신청구분	공공형		운영비지원기준	21 ~ 49인									
신청일자	2012-08-03												
정원/현원(6개월평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6	28	46	27	46	26	46	27	46	27	46	27	58.7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	1개월이전		2개월이전		3개월이전		유아비율						
	현원	유아	현원	유아	현원	유아							
	0	0	0	0	34	19	55.88 %						
평가인증 연도/기수	2010 / 06		평가인증 참여유형		일반참여								
평가인증시 부여받은 아이디			평가인증 점수(총점)		90.3								
첨부파일	② 찾아보기...												

* ①[양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서식(신청서와 자기평가서)을 PC에 저장한 후 상세내역 작성

* ②[찾아보기] 클릭 후 반드시 첨부파일(신청서+자기평가서) 업로드해야 ③저장됨

④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양식다운로드 신청 신청취소 취하				
선택	신청일자	신청구분	상태	사유
☒	2012.08.03	공공형	미신청	

[자동생성](#)
[저장](#)

신청구분	☒ 공공형		운영비지원기준	20인 이하																																														
신청일자	2012-08-03																																																	
정원/현원(6개월평균)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7월</th> <th colspan="2">8월</th> <th colspan="2">9월</th> <th colspan="2">10월</th> <th colspan="2">11월</th> <th colspan="2">12월</th> <th rowspan="2">정원충족률</th> </tr> <tr>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h>정원</th> <th>현원</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20</td> <td>100 %</td> </tr> </tbody> </table>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0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0 %																																						
현원/유아인원(3개월평균)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1개월이전</th> <th colspan="2">2개월이전</th> <th colspan="2">3개월이전</th> <th rowspan="2">유아비율</th> </tr> <tr> <th>현원</th> <th>유아</th> <th>현원</th> <th>유아</th> <th>현원</th> <th>유아</th> </tr> </thead> <tbody> <tr> <td>20</td> <td>0</td> <td>20</td> <td>0</td> <td>18</td> <td>0</td> <td>0 %</td> </tr> </tbody> </table>												1개월이전		2개월이전		3개월이전		유아비율	현원	유아	현원	유아	현원	유아	20	0	20	0	18	0	0 %																		
1개월이전		2개월이전		3개월이전		유아비율																																												
현원	유아	현원	유아	현원	유아																																													
20	0	20	0	18	0	0 %																																												
평가인증 연도/가수	2012 / 02		평가인증 참여유형	재인증																																														
평가인증시 부여받은 아이디			평가인증 점수(총점)																																															
첨부파일	아이사랑어린이집 신청서[1].hwp 찾아보기...																																																	

- * 신청서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 * 상태가 <신청>인 경우라도 <신청취소> 버튼 클릭시 신청취소됨
- * <신청> 후 취하시 <취하>버튼 클릭하면 즉시 신청이 취하되며, 익월부터 반영됨
(취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는 별도로 시·군·구에 제출)

⑤ 설치운영관리 상태변경 표시

어린이집인증여부	☐ 인증어린이집아님 ☒ 인증어린이집	
어린이집인증구분	☒ 평가인증 ☐ 공공형 ☐ 서울형 ☐ 부산형 공공형신청 (상태 :)	
보험가입	1. 상해 : ☒ 가입 ☐ 미가입 2. 화재 : ☒ 가입 ☐ 미가입 3. 배상 : ☒ 가입 ☐ 미가입	

- * 신청완료하면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 공공형신청 상태가 “신청”으로 표시됨
- * 설치운영관리 화면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선정, 반려] 상태를 표시함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2014년 3월 인쇄

2014년 3월 발행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인 쇄 처 : 성우애드컴 (T. 02-890-0900)

<비매품>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